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40호 2018. 4. 11.(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4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506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5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1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0길 45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444-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4길 67-16	2009-12-28	2018-04-11	우륵길의 시점으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35	2009-04-01	2018-04-11	자연마을인 죽전마을을 통과하여 분기 되는 네번째 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29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길 42	2009-04-01	2018-04-11	느릅나무가 많은 골짜기인 유곡의 중간에 자리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번리 82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2길 404-41	2009-12-28	2018-04-11	지내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635-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1길 80	2009-04-01	2018-04-11	조선 중엽 이후 황토백산에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3-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0길 45	2016-04-20	2018-04-11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거창군수

1. 폐지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고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을 중복 기재하여 규정 실익이 없으며, 2017~18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해당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민원봉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288], 전화[940-3292] 또는 E-mail[onena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